

총리령 제 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관리원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3월”을 “9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원 지정 및 업무 범위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원 지정 및 업무 범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관리원의 지정·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.</u>
제18조(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조 사·평가 절차) ①·② (생 략)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 다 조사·평가를 하고, 그 결과 를 평가한 후 다음 해 <u>3월</u> 에 공 표하여야 한다. ④·⑤ (생 략)	제18조(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조 사·평가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9월</u> ----- 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